

22. 슬로바키아(Slovak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06년(급여생활자), 1924년(임금생활자)
- 현행법 : 1998년(장제비, 1999년 시행), 2003년(사회보험, 2004년 시행), 2003년(고용서비스, 2004년 시행), 2004년(개인계좌, 2005년 시행)

2. 제도형태

- 보편적제도(장제비),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제도
 - ※ 2013.1.1.부터 신규근로자의 개인계좌 가입은 임의, 개인계좌 납부여부는 35세 이전에 결정해야 하고, 결정은 바꿀 수 없음

3. 적용대상

- 보편적제도(장제비) : 슬로바키아 거주자
-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제도
 - 당연적용 : 근로자, 최저평가기초금액의 12배 이상 연 소득을 가진 자영자
 - 최저평가기초금액 : €456
 - 임의가입 가능
 - 특별제도 : 특정 정보국요원, 보안요원, 경찰, 소방관, 세관직원, 군인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보편적제도(장제비) : 없음
 - 사회보험
 - 월 총 가입소득의 7% 납부(노령 4%, 장애 3% 포함)
 - 근로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없음
 - * 임의가입자의 경우, €456
 - 근로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€6,384
 - * 임의가입자의 경우, €6,384
 - 개인계좌 : 없음,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보험료를 납부
- 자영자
 - 보편적제도(장제비) : 없음

- 사회보험
 - 사회보험만 가입한 자영자의 경우 월 신고소득의 24% (노령 18% 장애 6%)
 -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에 가입한 경우 19.5%(노령 13.5%*, 장애 6%)
 - * 노령연금 요율의 경우 연 0.25%씩 하향되어 2024년에 12%에 달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€456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€6,384
- 개인계좌
 - 소득의 4.5%(연 0.25%씩 인상되어 2024년에 6%까지 인상) 행정수수료 추가납부

○ 사용자

- 보편적제도(장제비) : 없음
- 사회보험
 - 사회보험만 가입한 경우 : 월 총소득의 17% (노령 14%, 장애 3%)
 -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에 가입한 경우 : 월 총소득의 12.5% (노령 9.5%*, 장애 3%)
 - * 노령연금 요율의 경우 연 0.25%씩 하향되어 2024년에 8%에 달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: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€6,384
- 개인계좌
 - 가입자가 개인계좌가 있는 경우 월 총소득의 4.5%(연 0.25%씩 인상되어 2024년에 6%까지 인상)

○ 정 부

- 보편적제도(장제비) : 총 비용
- 사회보험
 - 결손금 지원
 - 6세(심각한 만성건강질환은 18세)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자, 모성급여 수급자, 장애급여 수급자(퇴직연령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까지 지급됨)의 보험료 지원
- 개인계좌
 - 6세(심각한 만성건강질환은 18세)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자, 모성급여 수급자, 장애급여 수급자(퇴직연령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까지 지급됨)의 보험료 지원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62세 139일 도달자(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상향)
-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퇴직연령요건은 하향됨
- 노령연금 수급권자 계속 근로 가능
- 최저보장노령연금 : 가입자의 총 월 연금소득이 월 최저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가입기간 30년 이상의 정상퇴직연령인 자에게 지급
- 최저 월액은 법정 월 최저생계비의 136%이며 30~39년의 가입기간인 경우 각 해마다 2% 추가, 39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해마다 3% 추가됨
- 조기연금
 -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정상퇴직연령 2년 전부터 수급 가능
 -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의 총 월 연금은 법정 월 최저생계비의 1.2배 이상임
 - 고용 및 자영은 중단되어야 함
- 법정 월 최저생계비 : €199.48
- 법정 월 최저생계비는 매년 7월 노동사회가족부에 의해 조정됨
- 연기연금 : 연령제한 없음
- 해외송금 가능
- 보상수당(사회보험)
 - 1993.1.1. 체코-슬로바키아 연방해체 전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1993년에서 2003년까지 가입기간 1년 이상 있으며 가입자가 자격이 되는 모든 연금을 청구해야 함
- 노령연금(개인계좌)
 -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62세 139일 도달자(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상향)
 -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퇴직연령요건은 하향됨
 - 조기연금 :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의 총 월 연금은 법정 월 최저생계비의 1.2배이상
 - 법정 월 최저생계비 : €199.48
 - 법정 월 최저생계비는 매년 7월 노동사회가족부에 의해 조정됨
 - 해외송금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완전장애(70% 이상의 근로능력 상실)로 판정된 경우 지급
 - 20세 이하는 1년 미만, 21~24세는 1년 이상, 25~28세는 2년 이상, 29~34세는 5년 이상, 35~40세는 8년 이상, 41~45세는 10년 이상, 45세 초과자는 15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
 -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미충족해야 함
 - 부분연금 : 70%미만이나 40%이상의 근로능력 상실로 판정되어야 지급

- 장애연금 수급권자 계속 근로 가능
- 사회보험청의 의학 검사자가 장애등급을 판정
-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장애연금은 중단되며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연금액이 낮은 경우 최저 노령연금액의 가치만큼 증가됨
- 해외송금 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, 장애, 조기 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가입자의 사망 원인이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의한 사망인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- 수급가능 유족
 - 사망자와 결혼했던 배우자
 - 법적 졸업나이 이전의 고아(전업 학생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26세)
 - 재혼 시 연금 중단
 - 해외송금 가능
- 유족연금(개인계좌)
 - 가입자가 개인계좌 급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가입자가 84개월 미만으로 급여가 지급됐거나(월단위) 또는 연금이 유족을 위한 보험을 제공한 경우 지급
 - 해외송금 가능
- 장제비(보편적제도) :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월 연금은 개인 평균 임금지수와 가입기간, 현재의 연금가치(€11.9379)에 의해 산정됨
 - 개인 평균 임금지수는 특정 연도의 총 개인 임금지수와 총 가입기간을 나눈 값; 최대 개인 평균 임금지수는 3
 - 개인 임금지수는 전 국민 연평균 임금과 비교한 가입자의 총 연간소득의 비율임
 - 1984년 이후 가입자의 전체 소득이 연금 산정을 위하여 사용됨
 - 최저보장연금 : 가입자의 총 월 연금소득과 지급된 최저 월액의 차액 지급
 - 최저월액은 법정 월 최저생계비의 136%이며 30~39년의 가입기간인 경우 각 해마다 2% 추가, 39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해마다 3% 추가됨

- 법정 월 최저생계비 : €199.48
- 법정 월 최저생계비는 매년 7월 노동사회가족부에 의해 조정됨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은 정상퇴직연령 이전에 지급되는 연금 30일당 0.5%씩 감액
- 연기연금 : 노령연금은 정상퇴직연령 이후 청구되는 연금 30일당 0.5%씩 증액
- 급여조정 : 급여는 수급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; 2021년까지 증가율은 각각 2% 이상이어야 함
- 보상수당(사회보험)
 - 수급한 모든 연금과 현 제도가 없었던 1993년 이전을 포함한 총 가입연수를 토대로 가입자가 수급할 자격이 되는 노령연금(사회보험)의 차액이 지급됨
- 노령연금(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세가지(종신연금, 확정기간연금 또는 계좌인출) 중 선택가능; 연금 관리회사들은 인출금을 지급함
 - 조기연금 : 노령연금(개인계좌)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, 생명보험회사들은 계좌가입자의 연령을 고려함
 - 연기연금 : 노령연금(개인계좌)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, 생명보험회사들은 계좌가입자의 연령을 고려함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월 연금은 개인 평균 임금지수와 가입기간, 현재의 연금가치(€10.2524)에 의해 산정됨
 - 개인 평균 임금지수는 특정 연도의 총 개인 임금지수와 총 가입기간을 나눈 값; 최대 개인 평균 임금지수는 3
 - 개인 임금지수는 전 국민 연평균 임금과 비교한 가입자의 총 연간소득의 비율임
 - 1984년 이후 가입자의 모든 가입소득이 연금 산정을 위하여 사용됨
 - 부분 장애연금 : 장애연금액은 판정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
 - 월 최저/최고 장애연금 없음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수급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; 2021년까지 증가율은 각각 2% 이상이어야 함
- 장애연금(개인계좌) : 없음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배우자연금

- 사망자가 받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및 장애연금의 60% 지급
- 연금은 1년간 지급됨, 유족이 70% 이상 근로능력이 상실된 장애인이고 피부양 자녀를 돌보는 경우,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, 최소 52세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연금은 종신 지급
- 월 최저 유족연금액 없음

- 고아연금

- 사망자가 받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및 장애연금의 40% 지급
- 월 최저 고아연금 없음

-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자가 받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및 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- 급여조정 : 급여는 수급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; 증가율은 2% 이상이어야 함

• 개인계좌

- 계좌가입자가 개인계좌급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계좌 잔액이 지급됨
- 사망자가 종신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이나 84개월 지급분 미만으로 받은 경우 84개월 지급분의 총합과 이미 수급한 금액의 차액이 지급됨
- 사망자가 유족을 위해 보험이 있는 연금을 가입한 경우 사망자의 연금과 같은 금액의 유족연금이 구체적인 기간동안 지급됨(1년 또는 2년)

• 장제비(보편적제도) : €79.67을 일시금으로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보험

• 노동사회가족부(Ministry of Labor, Social Affairs and Family)

- www.employment.gov.sk
- 전반적 감독

• 사회보험청(Social Insurance Agency)

- www.socpoist.sk
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○ 보편적제도

• 노동사회가족 중앙사무소(Central Office of Labor, Social Affairs and Family)

- www.upsvar.sk
- 보편적제도 관리

○ 개인계좌

- 국립슬로바키아은행(National Bank of Slovakia)
 - www.nbs.sk
 - 연금기금 인허가 및 감독
- 인허 연기금관리회사
 - www.adss.sk
 - 개인계좌 운영
- 사회보험청(Social Insurance Agency)
 - www.socpoist.sk
 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